

□ **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**

결격사유
· 피성년후견인 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·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·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·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□ 한국해양진흥공사 채용세칙([별표2])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

공통자격
· 성별·연령별 제한 없음(단,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(만60세) 미만인자) ·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·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· 한국해양진흥공사 「인사규정」 제7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 ·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,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 가능한 자 ·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

□ 우대사항

구분	대상	서류전형			면접전형		
		2%	5%	10%	2%	5%	10%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보훈 대상자 (취업지원 대상자)		○	○		○	○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		○	○		○	○
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」	장애인	○			○		
	중증 장애인		○			○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	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	○				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	북한이탈주민	○ (서류전형에 한함)				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	다문화 가족 구성원	○ (서류전형에 한함)					
「아동복지법」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○ (서류전형에 한함)					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	비수도권 대학졸업 (휴학, 재학)	○ (서류전형에 한함)					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	경력단절여성		○ (서류전형에 한함)				

○ 유의사항

- 가. 각 전형 별 만점의 40% 이상 점수(필기전형의 경우 각 과목 점수의 40% 이상)를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,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나. 우대사항 요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하며, 상기 대상자일 경우 전문 자격증과 중복적용 가능
(단, 전문 자격증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,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인정)
- 다.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라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)를 초과할 수 없음
- 라. 지역인재 가점은 신입직 채용에만 해당
- 마.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가점 적용 비율과 보훈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, 누락 시 가점 검토에서 제외됨
- 바. 전형단계별 가점기준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임
- 사.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,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함